

##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### 제1조 (계약 목적)

- ① 시설과 이용자(입소자),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.
  1. 계약 당사자
  2. 계약기간
 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 4.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④ 장기 요양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.)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-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.

### 제2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매년 말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
1. 장기 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
2. 감정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
⑤ 「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### 제3조 (계약해지)

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.

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4.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5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
6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7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### 제4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 · 의무)

① 신원인수인 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3.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4.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 상담,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5.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

권리

6.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 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수급자의 급여 계획에 관한 알 권리
8.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9.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
② 신원 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,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5.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## 제5장 이용료

### 제1조 (이용료)

-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 비용은 원장이 정한다.
-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- ③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한다.
-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.

### 제2조 (이용료 변경 및 절차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

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1. 이용자의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  2.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
  3. [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]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  4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때
- ②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.
2.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.
3.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.
5.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3조 (이용료 납부)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 기한 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.
-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,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.
-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월 등급별 본인부담금 비용 (2026년)

(30(31)일 기준비용)

| 구 분   |        | 본인부담금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| 일반(20%)           | 경감(12%)           | 경감(8%)            |
| 1등급   | 93,070 | 558,420 (577,030) | 335,050 (346,220) | 223,360 (230,810) |
| 2등급   | 86,340 | 518,040 (535,300) | 310,820 (321,180) | 207,210 (214,120) |
| 3-5등급 | 81,540 | 489,240 (505,540) | 293,540 (303,320) | 195,690 (202,210) |

※예시) 1등급 93,070원 X 30일 X 20% = 558,420원 / 1등급 93,070원 X 31일 X 20% = 577,030원

2. 비급여 항목별 비용

(30(31)일 기준비용)

| 항 목   |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식재료비  | 3,800원 X 3식 X 30일 = 342,000 ( 353,400 ) |
| 간 식 비 | 1,500원 X 30일 = 45,000원 ( 46,500 )       |
| 합 계   | 387,000원 ( 399,900 )                    |

3. 합계

(30(31)일 기준비용)

| 구 분   | 일반                | 경감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12% 대상자           | 8% 대상자            |
| 1등급   | 945,420 (976,930) | 722,050 (746,120) | 610,360 (630,710) |
| 2등급   | 905,040 (935,200) | 697,820 (721,080) | 594,210 (614,020) |
| 3-5등급 | 876,240 (905,440) | 680,540 (703,220) | 582,690 (602,110) |